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2(수입신고 등)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(이하 “관계서류”라 한다)

2. 상업송장

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그 발급현황을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출한 서류에 관하여 산림청장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4조의3(수입검사)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, 그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발급한 국가 또는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진위 여부,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계서류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고인, 해당 신고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수입신고확인증					
접수번호				접수일	년 월 일
발급번호				발급일	년 월 일
수입 신고 인	사업자 등록번호				대표자
	상호				주소
제품명				수종 (목재의 경우만 적습니다)	
총 수량				총 중량	
화물관리번호				선하증권번호 (B/L번호)	
원산국				수출국	
생산회사				수출회사	
품목번호 (HSK번호)					
수입신고확인증 발급조건					
제 품 내 용					
연번	제품명	성분	화물관리번호	수량	중량
<p>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					
산림청장			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orange; display: inline-block; padding: 5px 15px;">직인</div>	

상 호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사업 실적 보고

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생산(수입)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(단위: m³, 톤)

목재생산업의 종류	원목의 수종 및 목재제품의 종류 (원산지/제조국)	생산량(수입량)		판매량		재고량 (A-B)
		전월 실적	당월 실적(A)	전월 실적	당월 실적(B)	

끝.

* 작성방법

1. 원목생산업의 경우: 원목의 수종별 생산량·판매량·재고량을 적습니다.
2. 제재업의 경우: 목재제품의 종류별 생산량·판매량·재고량을 적습니다.
3. 목재수입유통업의 경우: 수입한 원목의 수종별 및 목재제품의 종류별 원산지(제조국)·수입량·판매량·재고량을 적습니다.

발 신 업 체 명 의

직인

시행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 /